

중소기업 범위 기준

□ 중소기업 범위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)

○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,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

- (규모기준)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

* (업종별 규모기준)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

* (상한기준)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,000억 원 미만일 것

<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(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,3)>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	분류부호	중소기업 (평균매출액)	소기업 (평균매출액)
제조업 (6개업종)	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1,500억원이하	120억원 이하
	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	
	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	
	1차 금속 제조업	C24		
	전기장비 제조업	C28		
	가구 제조업	C32		
농업, 임업 및 어업		A	80억원 이하	
광업		B		
제조업 (12개업종)	식료품 제조업	C10	1,000억원 이하	120억원 이하
	담배 제조업	C12		
	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 제외)	C13		
	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 제외)	C16		
	코르크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	
	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 제외)	C20		
	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	
	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)	C25		
	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	
	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	
	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	
	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	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		D	120억원 이하	
수도업		E36		
건설업		F	80억원 이하	
도매 및 소매업		G		
제조업 (6개업종)	음료 제조업	C11	800억원 이하	120억원 이하
	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	
	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	
	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	
	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	
	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	

수도,하수 및 폐기물 처리,원료재생업(수도업제외)	E(E36 제외)	600억원 이하	30억원 이하
운수 및 창고업	H		80억원 이하
정보통신업	J		50억원 이하
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	C34	400억원 이하	10억원 이하
전문,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	30억원 이하
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(임대업제외)	N(N76제외)		30억원 이하
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	10억원 이하
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	30억원 이하
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	10억원 이하
숙박 및 음식점업	I		10억원 이하
금융 및 보험업	K		80억원 이하
부동산업	L		30억원 이하
임대업	N76		30억원 이하
교육 서비스업	P	10억원 이하	
※비고 :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			
자동차용 신풍 의자 제조업	C30393	평균매출액등 1,500억원 이하	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
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	C31202		
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	C31322		

- (독립성 기준)

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

② 자산총액 5,000억 원 이상인 법인(외국법인 포함,비영리법인 등 제외)
이 주식등의 30%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
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

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
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이 아닐 것

※ 관계기업 :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
지배·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

※ 단,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(연합회)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